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160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, 주택의 건설·개량·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설립, 운영하고 있음
- 나. 이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규모 주택공급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고자 출자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,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주택도시공사
- 관련법령
 - 법령: 지방공기업법
 - 조례: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나. 주요사업

-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
 - 건설 및 매입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
-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
 - 소형주택지 주거환경 개선,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동시행, 기술지원

다. 출자의 필요성

-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확산을 유도하고 있으며, 서울시 주택공급 실행 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 중임
-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고자 출자금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추경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정책팀 이아름(☎ 2133-7249)

[붙임] 서울주택도시공사 2020년 출자사업(출자금) 내역

(단위:백만원)

사업명	2020년 (출자금)	산출내역
소규모주택정비사업	1,053	공공임대주택 매입(30호, 시비) : 70,168,530원 * 30호 * 50% = 1,052,528천원 ※ 매입임대주택 국비: 1.9억원 / 호 ※ 시·SH 부담금: 국비를 뺀 금액의 5:5 부담 (감정평가금액)-(국비) * 50%